지급등의 방법(변경) 신고서			
거 래 내 용	거 래 종 류	□ 수출거래 □ 수입거래 □ 용역거래 □	자본거래
	계약상대방	상호 및 대표자성 명 주 소, 전 화 번 호	
	 결 제 방 법	   □ 신용장(L/C) □ 추심(D/P, D/A) □ 송금 □ 기티	<del>l</del> ( )
	급 액	계 약 금 액 신고금액	
지급등의 방법	(1)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 급또는 영수	결 제 기 간 당초기간 변경 변경	
		결 제 시 기 당초시기 변경	
		결 제 방 법 □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□ 기티	<del></del>
	(2)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, 차기	계정의구 분 및 대차 기금액 借記 전액	
		결 제 방 □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□ 기타(	)
	(3) 기 타	구 분 □ 제3자 지급 □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	
		결제시기	
변경			
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
년 신고인			[ 일 ①
(전화			)
한국은행총재 귀하			